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22836 집행판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05. 9. 30.
판 결 선 고	2005. 10. 14.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필립 양(Philip Yang)이 2005. 1. 11.에 한 별지 목록 기재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씨 스완(Sea Swan)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해운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용선계약의 체결

피고는 인도의 할디아(Haldia)항에서 중국의 난통(Nantong)항(이후 하역항이 난통항에서 천진항으로 변경됨)까지 철광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2004. 4. 14.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선박을 1회 항해용선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화물 : 벌크 철광석 30,000MT

⑵ 선적가능일 : 2004. 4. 20. ~ 25.

⑶ 선적항 : 인도 할디아항

⑷ 하역항 : 중국 난통항

⑸ 운임 : 톤당 미화 39.50달러

⑹ 체선료/조출료 : 미화 30,000달러/단, 선적, 하역항에서 조출료는 체선료의 절반

⑺ 중재와 공동해손이 있는 경우 영국법을 적용하여 홍콩에서 해결한다(ARB N G/A IF ANY TB SETTLED IN HONGKONG AND ENGLISH LAW TO APPLY : 이는 'Arbitration and General Average, if any, to be settled in

Hong Kong and English Law to apply'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⑻ 기타 사항은 GENCON약관에 따른다.

다. 운송완료 및 운임 등의 미지급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원고는 철광석 26,440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고 운송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운임 미화 1,044,380달러 및 체선료 미화 452,059.10달러(선적항 미화 441,237.40달러 + 하역항 미화 10,821.70달러) 합계 미화 1,496,439.10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중재판정

이에 원고는 홍콩국제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인 필립 양(Philip Yang)은 2005. 1. 11. 원고의 중재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단, 원래의 중재판정 제1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96,439.10달러 및 이에 대하여 3개월 단위의 복리에 의한 연 4%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나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 제1항과 같이 감축하여 그 집행을 구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

대한민국은 1973. 2. 8. ①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해서, 또한 ② 내국 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유보선언 하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에 가입·비준하였고, 위 협약은 1973. 5. 9. 조약 제471호로 발효되었으며,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동 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홍콩은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뉴욕협약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 요건

뉴욕협약 제4조에 의하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과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위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중재판정이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인 또는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원본 및 이에 대한 공증인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 중재합의를 포함하는 용선계약서의 원본 및 이에 대한 공증인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을 제출하였으므로,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집행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중재합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 주장의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내용 중 위 1.의 나. ⑺항(이하 '이 사건 중재관련 합의부분'이라고 한다)의 의미는 이후에 원, 피고 사이에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경우 중재지를 홍콩, 중재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내용이 원, 피고 사이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한다는 중재합의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⑵ 뉴욕협약의 규정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호 후단은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으며, 중재합의의 유무 또는 그 효력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⑶ 판단

이 사건 용선계약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중재관련 합의부분을 구속력 있는 중재합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귀결되는바, 우선 원,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적용될 준거법 내지 적어도 중재합의에 관한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지정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중재합의의 해석 및 그 효력에 대한 판단도 당사자들이 지정한 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법에 의하면, 'Arbitration, if any, by I.C.C. rules in London'과 같은 합의만으로도 전반적으로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ICC규칙에 따라 런던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되어 구속력 있는 유효한 중재약

정에 해당하고, 그 중 'if any'란 문구는 불필요한 군더더기 혹은 '만약 분쟁이 있다면(if any dispute arise)'의 축약어에 불과하며, 한편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GENCON약관(1994.개정)은 용선계약에 관한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중재지 및 그 준거법만을 공란으로 두어 당사자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관련 합의부분은 중재지는 홍콩,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지정한 영국법상 구속력 있는 유효한 중재약정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재판정의 집행이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은 ① 원고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중국법상 유치권 및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운임 등의 청구권이 실효되었다 할 것임에도, 중재인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중국법상 유치권 및 경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는바, 중재판정 자체에 명백한 법리오해가 있고, ②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을 매각하여 운임 중 일부인 미화 590,000달러를 회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중재판정이 집행된다면 원고는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이 집행신청국인 대한민국의 공공의 질서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⑵ 관련법규

㈎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제2호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

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채무의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인에게 운임, 체선료 등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물에 관한 유치권이 인정되고 유치된 화물이 하역항에 도착한 후 60일 내에 아무도 가져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권이 인정되며, 우리나라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선장은 운임, 부수비용 등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화물을 유치할 수 있고(제800조 제2항), 선박소유자는 그러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제804조 제1항),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에 대한 경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 대한 청구권을 잃는다(제805조)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면서 제805조가 삭제되었다.

⑶ 판단

㈎ 중재판정 자체에 명백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중재판정 자체에 명백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사유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판결을 요구받은 법원이 중재판정의 내용에 대한 당부에 들어가 심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에 명백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

이며,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우리나라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중재판정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우리나라 상법에 있어서 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 및 경매권은 권리로서 인정될 뿐이고 의무로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운송인의 운임 등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가사 이 사건 중재판정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국법에 대한 법리오해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원고에게 여전히 운임 등의 청구권이 있다고 본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우리나라의 공공의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이중으로 이득을 취득하게 된다는 주장

피고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 운임 중 일부인 미화 590,000달러를 회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중재판정을 집행하여 이중으로 운임 등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 법의 공공질서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매각하여 운임 중 일부인 미화 590,000달러를 회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동환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근 _____

판사 양민호 _____

판사 조인영 _____

중재판정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96,439.1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홍콩화 21,500달러를 지급한다. 끝.

⑶ 판단

㈎ 중재판정 자체에 명백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유치권 및 경매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는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것이지 이를 의무로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운임, 정박료 및 기타의 비용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고(제804조 제1항),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에 대한 경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 대한 청구권을 잃는다(제805조)'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면서 제805조가 삭제되었는바 우리나라 상법에 있어서도 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 및 경매권은 권리로서 인정될 뿐이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운송인의 청구권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피고가 주장하는 중국법에 대한 법리오해가 인정된다하여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우리나라의 공공의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